

※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 2018년 9월 1일 개정본

(단위 : W/m²K)

건축물의 부위		지역 구분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9 이하
		공동주택 외		0.17 이하	0.24 이하	0.32 이하	0.41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41 이하
		공동주택 외		0.24 이하	0.34 이하	0.45 이하	0.56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 이하		0.18 이하	0.2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 이하		0.26 이하	0.35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9 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17 이하	0.20 이하	0.25 이하	0.33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41 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24 이하	0.29 이하	0.35 이하	0.47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1.6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30 이하	1.50 이하	1.80 이하	2.20 이하
			문	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이하	1.50 이하	1.70 이하	2.00 이하
		공동주택 외	창	1.60 이하	1.90 이하	2.20 이하	2.80 이하
			문	1.9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 이하				

- 1) 중부1지역 : 강원(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제천), 경북(봉화, 청송)
- 2) 중부2지역 : 서울, 대전, 세종, 인천, 강원(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 3) 남부지역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경북(출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남(거창, 함양 제외)